

의안번호	2206959
의 퇴 인	박덕흠의원
회 답 일	2025.2.12.
추 계 번호	24D562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25년 이상 재직하였던 경찰·소방 공무원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4,200만원, 2030년 5,1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2억 3,200만원(연평균 4,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국립묘지별 경찰·소방 공무원 안장 대상자 (안 제5조제1항)	42	44	46	49	51	232	46

주: 1. 국립묘지별 경찰·소방공무원 안장 대상자(안 제5조제1항)은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
 2. 본 추계에서는 2023년 기준 공무원연금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개정안에 따른 경찰·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를 산출하고, 대상자는 국립묘지 안장을 100% 선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제1항(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은 국립현충원에 안장함 경찰·소방공무원으로 25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은 국립호국원에 안장함 ※2025년 2월 28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0356호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경찰·소방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에 한정한다)을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제1항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0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경찰·소방공무원 퇴직자 현황 정보 등을 제공하는 「2023년도 공무원연금통계」에 기초하여 개정안에 따른 안장 대상자를 산출
- 본 추계에서는 경찰·소방공무원 현황을 고려하여 성별은 남성, 평균 입직연령을 28세로 가정¹⁾하여 재직기간이 25년 이상 30년 미만인 대상자의 연령을 53세~57세, 30년 이상인 대상자는 58세 이상으로 추정
- 개정안에 따른 안장 대상자는 국립묘지 안장을 100% 선택하는 것으로 가정
 -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중 실제 안장을 신청하는 비율이 대상자의 직종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는데 경찰·소방공무원의 안장률을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
 - 이에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서 규정한 안장 대상자 전원이 국립묘지 안장을 선택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에 따라 안장 대상자 증가로 인한 국립묘지 확충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려하지 않기로 함
 - 재직기간 30년 이상인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을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도록 한 법률 제20356호(2025년 2월 28일 시행예정)에 따른 국립호국원 확충계획을 국립묘지 확충계획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가정

1) 「2023년도 공무원연금통계」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찰·소방공무원의 98.9%가 남성이고 신규 경찰·소방공무원의 평균 연령은 28.2세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²⁾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안장 대상자는 경찰·소방공무원으로 퇴직 후 연금수급을 하고 있는 기수급자와 향후 퇴직하는 신규 퇴직자로 구분한 후, ①재직기간이 25년 이상 30년 미만인 대상자, ②30년 이상인 대상자로 구분하여 추계
 - 다만,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대상자는 30년 이상 재직 후 명예퇴직한 자로 한정
 - － 재직기간 30년 이상인 정년퇴직자는 2025년 2월 28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 20356호에 따라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국립현충원과 국립호국원의 1인당 안장비용은 동일하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 기수급자 중에 개정안에 따른 안장 대상자 수는 2026년 480명, 2030년 472명으로 추정
 - (재직기간 25년 이상 30년 미만) 2026년 10명, 2030년 12명으로 추정
 - － 2023년 말 기준 기수급자 중 재직기간이 25년 이상 30년 미만인 53세부터 57세 연령의 기수급자 수에 연도별 남성 사망률(통계청 자료)을 적용하여 산출
 - (재직기간 30년 이상) 2026년 470명, 2030년 46명으로 추정
 - － 2023년 말 기준 기수급자 중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58세 이상의 기수급자 수에 연도별 남성 사망률(통계청 자료)을 적용하여 산출한후 명예퇴직자 비율 25%³⁾를 적용

2)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4.10)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소비자물가상승률(CPI)	3.6%	2.5%	2.1%	2.0%	2.0%	2.0%	2.0%

3) 「2023년도 공무원연금통계」에 따르면, 경찰·소방공무원 퇴직자는 총 5,164명이고 이 중 명예퇴직자는 1,290명으로 25%

[표 2] 기수급자 중 안장 대상자 수 추정: 2026~2030년

(단위: 명)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재직기간 25년 이상 30년 미만	53세	245	244	243	242	241	240	239	238
	54세	316	315	314	312	311	309	308	306
	55세	403	401	399	397	395	393	391	389
	56세	465	463	461	458	456	453	450	448
	57세	596	593	590	587	583	580	576	572
	합계	2,025	2,016	2,007	1,997	1,987	1,976	1,965	1,953
대상자 수 (전년대비 감소=사망자)					10	10	11	11	12
재직기간 30년 이상 (명예퇴직자)	58세	757	753	749	744	739	734	729	724
	59세	975	969	963	957	950	943	936	928
	~	~	~	~	~	~	~	~	~
	84세	831	632	475	353	260	188	135	95
	85세 이상	3,220	2,909	2,597	2,288	1,986	1,696	1,422	1,167
	합계	56,732	55,143	53,533	51,895	50,226	48,523	46,786	45,015
대상자 수 (=전년대비 증감×25%)					410	417	426	434	443
기수급자 중 대상자 수					420	427	437	445	455

주: 1. 2023년 말 기준 연령별 기수급자 수(공무원연금공단, 「2023년도 공무원연금통계」)에 통계청의 연도별 연령별 남성 사망률을 적용하여 연도별 기수급자 수를 산출하면, 전년대비 감소한 인원이 사망자이고 이는 곧 개정안에 따른 안장 대상자가 됨
 2. 재직기간 30년 이상인 대상자 중 명예퇴직자가 개정안에 따른 대상자이므로 명예퇴직자 비율 25%를 적용
 3. 단수 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신규 퇴직자 중에 개정안에 따른 안장 대상자 수는 2026년 24명, 2030년 124명으로 추정

- (재직기간 25년 이상 30년 미만) 2026년 3명, 2030년 14명으로 추정
 - － 「2023년도 공무원연금통계」 기준 신규 퇴직자 중 재직기간이 25년 이상 30년 미만인 53세부터 57세의 퇴직자 수가 추계기간 동안 매년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 연령별 퇴직자 수에 연도별 남성 사망률(통계청 자료)을 적용하여 산출
- (재직기간 30년 이상) 2026년 470명, 2030년 46명으로 추정
 - － 「2023년도 공무원연금통계」 기준 신규 퇴직자 중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이면서 명예퇴직자로 추정되는 연령은 58세, 59세이고 해당 연령의 퇴직자 수가 추계기간 동안 매년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 연령별 퇴직자 수에 연도별 남성 사망률(통계청 자료)을 적용하여 산출

[표 3] 신규 퇴직자 중 안장 대상자 수 추정: 2026~2030년

(단위: 명)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재직기간 25년 이상 30년 미만	2026	53세	61	61	61	60	60	60
		54세	90	90	89	89	89	88
		55세	135	134	134	133	133	132
		56세	158	157	157	156	155	154
		57세	189	188	187	186	185	184
		소계	633	630	628	625	622	619
		대상자 수	—	3	3	3	3	3
	2027	53세	—	61	61	61	60	60
		54세	—	90	90	89	89	89
		55세	—	135	134	134	133	133
		56세	—	158	157	157	156	155
		57세	—	189	188	187	186	185
		소계	—	633	630	628	625	622
		대상자 수	—	—	3	3	3	3
	~	53세	—	—	~	~	~	~
		~	—	—	~	~	~	~
		57세	—	—	~	~	~	~
		소계	—	—	~	~	~	~
		대상자 수	—	—	~	~	~	~
	2030	53세	—	—	—	—	61	61
		54세	—	—	—	—	90	90
		55세	—	—	—	—	135	135
		56세	—	—	—	—	158	157
		57세	—	—	—	—	189	188
		소계	—	—	—	—	633	631
		대상자 수	—	—	—	—	—	2
	대상자 수 합계		—	3	5	8	11	14
재직기간 30년 이상 (명예퇴직자)	2026	58세	223	222	221	219	218	217
		59세	433	431	428	425	423	420
		소계	656	652	649	645	641	637
		대상자 수	—	4	4	4	4	4
	2027	58세	—	223	222	221	220	218
		59세	—	433	431	428	426	423
		소계	—	656	653	649	645	641
		대상자 수	—	—	3	4	4	4
	~	58세	—	—	~	~	~	~
		59세	—	—	~	~	~	~
		소계	—	—	~	~	~	~
		대상자 수	—	—	~	~	~	~
	2030	58세	—	—	—	—	223	222
		59세	—	—	—	—	433	431
		소계	—	—	—	—	656	653
		대상자 수	—	—	—	—	—	3
	대상자 수 합계		—	4	7	11	14	18
신규 퇴직자 중 대상자 수				7	12	19	25	32

주: 1. 「2023년도 공무원연금통계」 기준 연령별 신규 퇴직자 수가 추계기간 동안 매년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통계청의 연도별 연령별 남성 사망률을 적용하여 산출하면, 전년대비 감소한 인원이 사망자이고 이는 곧 개정안에 따른 안장 대상자가 됨

2. 단수 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개정안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수는 2026년 427명, 2030년 487명으로 추정

[표 4] 개정안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수 추정: 2026~2030년

(단위: 명)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기수급자	420	427	437	445	455
신규 퇴직자	7	12	19	25	32
합계	427	439	456	470	48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포함)의 1인당 안장비용은 2026년 97,625원, 2030년 105,727원으로 추정

-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1인당 안장비용은 현충원과 호국원이 동일하고 2025년 기준 95,760원
- 본 추계에서는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값을 적용

[표 5] 1인당 안장비용 추정: 2026~2030년

(단위: 원)

	2026	2027	2028	2029	2030
1인당 안장비용	97,675	99,629	101,621	103,654	105,72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25년 이상 재직하였던 경찰·소방공무원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4,200만원, 2030년 5,100만원 등 향후 5년간 2억 3,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대상자 수(a, 명)	427	439	456	470	487	—
1인당 안장비용(b, 원)	97,675	99,629	101,621	103,654	105,727	—
추가재정소요 (=a×b, 백만원)	42	44	46	49	51	23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2023년 기준 공무원연금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개정안에 따른 경찰·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를 산출하고, 대상자는 국립묘지 안장을 100% 선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